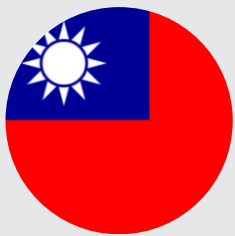


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

수입통관

이슈바로가기

대만, 수입 식품 검사 정보 신고 지침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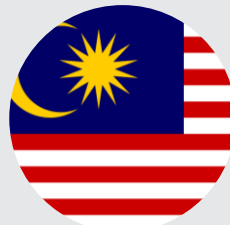
- 2024년 6월 26일, 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「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정보 신고 지침」개정안을 발표함. 개정안은 수입 식품 관련하여 제품 사양, 성분, 첨부서류 등이 일부 변경됨
 - 주요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심층기사 및 원문 참조)
 - 제품 사양 : 용기 또는 포장에 있는 경우, 단일 용기 내의 수량·순 중량·표장 규격 명시
 - 제품 성분 : 2가지 이상의 성분이 있을 경우, 내용물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작성
 - 제품 카테고리 : 총 9가지의 카테고리(ex. 저산성 통조림 식품 : 코드1, 산성화된 통조림 식품 : 코드2)
 - 첨부 서류 : 식품 사업자 등록 번호(필수), 제품 등록 번호(식품첨가물 신고의 경우), 원산지 증명서, 위생증명서, 수입신고서, 제품 검사 서류, 운송 관련 문서 등(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)
- (*) 다른 수출 건으로 동일 서류 업로드 및 5년 이내 전자신고 접수 사례 있는 경우, 기존 수출 건의 신청번호 기재만 필요

(*) 시행일 : 2024년 7월 1일

출처: 대만 식품약품관리서(TFDA), 修正「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資訊欄位申報須知」, 並自中華民國一百十三年七月一日生效, 2024.06.26

말레이시아, 자킴(JAKIM) 할랄 인증 절차 변경

- 2024년 1월 1일부터,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자킴(JAKIM) 할랄 인증 신청 절차를 변경함. 자킴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 인증서는 2년간 유효함
- 주요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심층기사 참조)
 - 할랄 인증 신청 필수 서류 : 신청 회사 사업 등록증, 현지 당국에서 발행한 제조 허가증 등
 - 자킴 할랄 인증과 상호 인증 가능한 한국 할랄 인증



TBT

이슈바로가기

기관명	인증 로고	기관명	인증 로고
한국이슬람교중앙회 (KMF)		한국할랄인증원 (KHA)	

(*) 시행일 : 2024년 1월 1일

출처: Halal Malaysia Official Portal(halal.gov.my)

태국, 식품 내 농약 잔류물 규정 개정

- 2024년 6월 12일, 태국 식품의약품청은『식품 내 농약 잔류물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 No. 449』를 발표함
- 주요 개정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심층기사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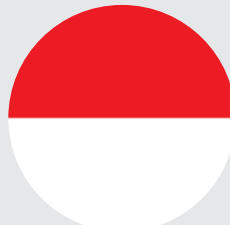
구분	농약 종류	식품 유형	최대 잔류허용기준	
			기존	개정
수정	카바릴 (Carbaryl)	망고스틴	1mg/kg	20mg/kg
신규	티아메톡삼 (Thiamethoxam)	파인애플	0.01mg/kg	
	클로티아니딘 (Clothianidin)	파인애플	0.01mg/kg	
	플루피라미 (Fluipyram)	망고	1mg/kg	
		용안	2mg/kg	

(*) 발효일 : 2024년 6월 12일

출처: 태국 식품의약품청(FDA), 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ุขว่าด้วยการมีสารพิษตกค้าง(ฉบับที่ 4), 2024.06.12

인도네시아, 건강보조식품 라벨링 규정 발표

- 2024년 6월 7일,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『천연 의약품, 의약외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 제10호』를 공포함
 - 주요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심층기사 참조)
 - 라벨링 요구 사항 : 인도네시아에 유통되기 전 건강보조식품에 라벨을 부착해야 함
 - 필수 라벨링 항목 : 제품명 및 제형, 제조업체 또는 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, 제품의 계약자 또는 수탁자의 이름 및 주소, 천연의약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로고 및 텍스트 등
 - 라벨링 금지 사항 : 허위 정보,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
- (*) 시행일 : 2024년 6월 7일 (해당 규정 이전에 유통 허가를 받은 제품은 본 규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규정의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)



TBT

이슈바로가기

출처: JDIH,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, 2024.06.25

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

TBT

이슈바로가기

중국, 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에 대한 국가 표준 개정 초안 공개

- 중국 국가보건위원회(NHC)는 2024년 6월 27일, 「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에 관한 일반 표준 GB 7718」을 포함한 14개의 식품 표준 초안을 공개함
 - 주요 개정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심층기사 참조)
 - 사전포장식품 및 유통기한과 보존기간에 대한 정의 추가, 식품 첨가제 범위를 명확히 함
 - 유통기한과 생산일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며, 연, 월, 일로 표기함
 - 보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식품의 경우, '장기 보관 가능' 과 같이 이해하기 쉽게 명시
 - 디지털 라벨은 변경이 불가능하며, 중국어 라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강화
- (*) 의견 수렴 마감일 : 2024년 8월 31일

출처 : 중국영양학회 영양건강연구소, 食品安全标准与监测评估司公开征求预包装食品标签通则意见, 2024.06.27

국산 수삼, 올해부터 미국 수출 가능

-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이 2024년 6월 최종 타결되어 올해부터 양국 간 교역이 일부 조건 하에서 가능하게 됨
- 주요 내용(일부 내용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참고)

순번	내용
①	- 상업적으로 생산된 수삼만 수입할 수 있음 - 모든 뿌리는 세척된 상태여야 하며, 잎, 줄기 및 흙과 같은 오염 물질은 제거되어야 함 - 손상되거나 해충에 감염된 뿌리는 선별하여 제거해야 함
②	- 수삼은 한국 국립식물보호기구(NPPO)에 등록된 생산지에서 재배되고, 한국 NPPO의 승인을 받은 포장 시설에서 포장되어 미국으로 수출되어야 함
③	- 수삼은 수확 전에 설린병균(Sclerotinia nivalis) 징후가 없는지 검사된 생산지에서 생산되거나, 재배 기간 동안 살균제 처리된 곳에서 생산되어야 함
- 한국 검역본부는 해당 검역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「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」을 올해 9월까지 제정·고시할 예정임



수입통관

이슈바로가기

출처 : Department of Agriculture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, Importation of Fresh Ginseng Roots (Panax ginseng C.A. Mey.)~, 2024.06.24

인도 찬디가르,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 시행



기타(환경)

- 2024년 7월 1일부터 인도 찬디가르 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을 시행하며,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
 - 주요 개정 내용(일부 내용 발췌, [원문](#))
 -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로 인해 식품 포장 및 제공 시 대체재 사용이 권장되며, 상인 및 상업 시설은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해야 함 (빨대, 비닐봉지, 일회용품류 등)
 - 벌금 부과(위반 시 마다 벌금이 증가하며, 반복 위반자는 더 엄격한 처벌 가능)
 - 노점상 : 200루피, (두번째 적발시) 500루피, (세번째 위반시) 1,000루피 벌금 부과
 - 상인 및 상업 시설 : 2,000루피, 5,000루피, 10,000루피 횡수마다 벌금 각각 부과
- (*) 시행일 : 2024년 7월 1일

출처 : Hindustan Times, Chandigarh: From July 1, violating single-use plastic ban to invite hefty fines, 2024.07.01

중국, 특정 동식물제품 수입 전 입국 검역 승인 요건 해제

- 2024년 6월 28일, 중국 해관총서는 특정 동식물 제품의 입국 검역 승인 요건을 철폐한다고 발표함.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는 7가지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더 이상 수입 전 입국 검역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, 중국의 검역 허가를 받은 국가(지역) 및 해관총서에 등록된 해외 생산, 가공, 보관 기업에서 수입되어야 함
 - 주요 내용(일부 내용 발췌, [원문](#))
 - 검역 승인 면제 품목 : 식물성 사료, 식물성 비료 및 재배 매체, 식물성 한약재, 담배 잎, 신선 채소, 사료용 어분, 동물 가죽 제품
 - 수입 요건
 - 해당 식품의 입국 후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역을 받아야 함
 - 중국에서 검역 접근이 허가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
 - 해외 생산, 가공 및 보관 기업은 중국해관총서(GACC)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
- (*)시행일 : 2024년 6월 28일



수입통관

출처 : 중국 GACC, 海关总署公告2024年第77号 (关于取消部分动植物产品进境检疫审批的公告), 2024.06.28